사업방법서 별지

1. 보험의 종류 : 특종-종합/가계성

2. 보험상품의 명칭 : 시민안전주택종합보험

3. 보험의 목적
   가. 동산 및 부동산(순수하게 원형대로 존재하는 토지 제외)
   나. 법률상의 배상책임
   다. 개인 및 기업이 부담하는 각종 비용손해
   라. 위 가, 나, 다 이외에 별도의 보험목적을 보장할 때 해당 개별 특약에 보험의 목적을 명기한다.

4. 보험기간 및 보험료 납입주기에 관한 사항
   가. 보험기간 : 1년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1년 이상 3년 이하의 장기계약 또는 1년 미만의 단기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나. 보험료 납입주기 : 일시납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보험료분납 특별약관 적용계약의 경우 분할하여 납입할 수 있다.

5. 배당에 관한 사항 :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6. 보험료 차등적용에 관한 사항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용한다.

7. 기타
   가. 보험료의 할인·할증에 관한 사항
   이 보험의「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적용한다.
   나. 보험료 납입 최고(독촉) 기간 : 관계법령 및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 보험료의 반환 : 관계법령 및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라. 보험계약대출 :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을 하지 않는다.
   마. 보험 종목의 변경 : 회사는 보험 종목의 변경을 승낙하지 아니한다.
   바. 가스사고 화재손해 특별약관에 대하여는 재물손해 보장제외 특별약관을 기본 부가토록 한다.
   사. 계약의 제한 : 아래에 해당하는 자를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에 한하여 판매한다.

(1) 계약자 : 지방자치단체(국토 내의 일부 지역을 구역으로 하고 그 구역 내의 모든 주민들을 구성원들로 하는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등을 말하며, 지방자치법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서 정의하는 특별시, 광역

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구 등이 이에 해당), 정부기관 및 준정부기관에서 운영하는 단체

(2) 피보험자 :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주민

아. 동 보험은 계약 체결시에 재물손해, 손해배상책임, 기타손해 중 2개 이상의 손해를 보장하여야 한다.

자. 장애인전용보험전환 특별약관 운영에 관한 사항

(1) 이 특약의 적용은 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근거한다.

(2) 이 특약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보험계약에 한하여 부가할 수 있다.

1.「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료가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보험

2. 모든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제1항」에서 규정한 장애인인 보험

(3) 기타

1. 관련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변경된 법령을 따른다.

2. 회사는 이 특약의 적용을 위해 알게 된 장애인 정보를 세액공제 목적으로만 활용하고, 다른 보험의 인수심사나 보험금 심사업무 및 요율산출 업무에는 활용하지 못한다.

차. 지방자치단체, 정부기관 및 준정부기관에서 운영하는 단체로 피보험자 세부명단 없이 그 단체에 소속된 특정대상자 전체를 피보험자로 하여 단체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피보험자 수의 변경에 따른 보험료 정산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카. 재난 주택임시거주일당 특별약관 및 재난 주택임시거주일당(Ⅱ) 특별약관의 경우 가입금액의 한도를 1가구당 2십만원 이내로 한다.